

第112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議錄

第1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	1面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1.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

의안 번호	8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6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동기능 전환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한시기구·정원 연장 승인에 따른 재정비
 - 부칙 제2조(한시기구)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

3. 개정근거

- 동기능전환관련 구분청 한시기구.정원 연장승인(서울시행정 13101-2625, 2001. 6.15)

4. 예산수반사항 : 필요없음

5.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63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01년 6월 30일까지”를 “2002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부칙 제2조(한시기구) 구 본청 기구중 자치행정과는 존속기한을 <u>2001년 6월30일까지</u> 로 한다.	부칙 제2조(한시기구) ----- <u>2002년 12월31일까지</u> -----